

# 준법감시보고서

■ 펀드명 : 2016 KIF-IMM 우리은행 기술금융펀드

■ 업무집행조합원 :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(주)

## 1. 투자기업

업체명	(주)티지오테크	대표이사	장택용	사업자등록번호	124-86-58758
소재지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40-11(공세동)				

## 2. 투자내용

### □ 투자유형 및 투자금액

구 분 <sup>1)</sup>	투자금액	투자단가 (전환가격/행사가격)	지분율
상환전환우선주	1,500,001,800원	4,610원/주	8.2%
기타( )			
합 계	1,500,001,800원	4,610원/주	8.2%
주요 투자조건 <sup>2)</su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325,380주</li><li>- 존속기간: 10년</li><li>- 의결권 有</li><li>- 배당: 발행가 1%</li><li>- 상환이율: 연복리 8%, 상환청구: 투자 후 3년후</li><li>- 전환비율: 우선주 1주 = 보통주 1주, 전환기간: 투자 후 존속기간까지</li><li>- Call Option(대주주 50% 한도 내 가능, 매수단가: 9,220원)</li><li>- Put Option(투자기업 50% 한도 내 가능, 환매단가: 4,610원)</li><li>- Tag-Along Rights, Liquidation Preference</li></ul>	

1)구분: 보통주, 전환우선주, 상환우선주, 상환전환우선주, CB, BW, 보통주(구주), 우선주(구주) 등으로  
기재

2)주요 투자조건: 상환조건, 전환조건, Refixing, Tag-Along, Drag-Along 등 주요 투자조건 기재

### □ 동반투자내역(\* 운용사내 타 펀드, 타 운용사 동반 투자내역)

구 분	투자재원	투자금액	투자단가
운용사내 타 펀드			
고유계정/타 운용사 등			

\* 본건 투자와 동시 기표 조건인 경우 기재 (동반 투자금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, 본건 투자도 집행되지  
않을 승인조건에 합함)

### 3. 투자 담당자

발굴자	정일부	심사자	정일부/김홍찬	사후관리자	정일부/김홍찬
발굴경위	지인 네트워크 통한 소개				

### 4.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확인

기준	요건			검토결과	
창업자 해당 여부	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			부(N)	
벤처기업 해당여부	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요건 충족여부 (벤처유형: 벤처투자기업 / 유효기간: 2015.12.13 ~ 2017.12.12)			적(Y)	
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해당여부	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기술혁신형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해당여부			부(N)	
중소기업 해당 여부 검토	중소 기업 기본 법	업종별 규모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아래 요건 ①,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</li> <li>① 주된 업종의 평균 매출액이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</li> <li>②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</li> </ul>	적(Y)	
		독립성 기준	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따른 독립성 충족		
		유예 기간	중소기업이 규모기준의 초과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, 최초 1회에 한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년도의 다음 사 업년도 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판단		
	중소기업 확인서	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(SMINFO)을 통한 중소기업확인서 징구			

## 5. 준법사항 확인

### □ 법령상 투자제한

내 용	평가		비 고
	기준	실제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투자제한업종 여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투자 : 자금대여등 일체의 자금지원 행위</li> </ul> </li> </ul>	적 부	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표준산업분류코드 : C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</li> <li>▪ 투자 제외업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융 및 보험업(65,66,67), - 부동산업(70)</li> <li>- 숙박 및 음식점업(55), - 무도장 운영업(88991)</li> <li>- 골프장및스키장운영업(8833) - 도박장운영업(88995),</li> <li>- 기타 서비스업(93) 다만, 산업용세탁업(93911)은 제외</li> </ul> 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</li> </ul>	적 부	적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거래대상이 금융기관의 주식인 경우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</li> <li>②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 조정전문회사 및 동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</li> <li>③ 사모투자전문회사</li> </ul> </li> </ul>	① ② ③ ④ 부	적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수관계인과 거래여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운용사가 결성한 타 투자조합</li> <li>② 운용사의 특수관계인</li> <li>③ 운용사의 주요주주<sup>1)</sup> 및 특수관계인</li> <li>④ 운용사가 결성한 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<sup>2)</sup> 및 특수관계인</li> </ul> </li> </ul>	① ② ③ ④ 부	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거래상대방 : 발행회사(신주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주요주주 : 10% 이상 또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력을행사</li> <li>2) 주요출자자 : 10% 이상</li> </ul> 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조합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증개하는 행위 여부</li> </ul>	적 부	적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실상 경영지배 목적 투자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의결권 있는 지분율의 50% 이상</li> <li>② 사실상의 경영 지배</li> </ul> </li> </ul>	① ② 부	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투자기업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임면권한</li> <li>* 투자기업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시 과반수 이상 의결권 행사</li> <li>* 창업투자 임직원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 겸직 (공동 대표 제외) 또는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면계약 행위</li> </ul>	적 부	적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외투자 요건 준수 여부</li> </ul>	적 부	적	<p>(해당사항 없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해외투자 방법 등의 준수 여부 확인 (미국회사는 의결권 있는 지분의 4.99% 한도 내 가능)</li> </ul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타 타 법령 위반 여부</li> </ul>	적 부	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법령명 : 해당사항 없음</li> <li>▪ 위반내역 : 해당사항 없음</li> </ul>

## □ 규약상 투자제한

내 용	평가		비 고
	기준	실제	
• 제31조 2항의 “주목적투자분야 1” 해당여부 ①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으로부터 투자용 기술평가 5등급(T5) 이상을 받은 중소기업 ②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기업	적부	적①	▪ 기술신용평가기관: 기술보증기금 TI2(2등급)
• 제31조 2항의 “주목적투자분야2” 해당여부 ①(중점투자분야) K-ICT 10대 전략사업(소프트웨어, IoT, 클라우드, 정보보안, 5G, UHD, 스마트디바이스, 디지털 콘텐츠, 빅데이터, 지능정보산업) 및 AR·VR·핀테크 등 ICT융합 관련분야 비상장 중소기업 ②(지능정보산업분야) AI, 빅데이터, 클라우드, IoT 및 이와 유사한 분야	적부	적①	▪ 사업분야 : UHD
• 제31조 3항의 인정투자 해당여부 ① 창업자에 대한 투자 ②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③ 기술혁신형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	적부	적②	
• 제31조 4항의 구주 등 투자 여부	적부	부	※ 비상장중소기업 기발행 주식 등 투자여부
• 제31조 5항의 동일기업 등에 대한 투자 여부	적부		※ 출자약정액의 20% 이내 한도
• 제31조 6항의 후행투자 여부 ① 운용사 고유계정 투자기업 여부 ② 운용사 타 펀드 투자 기업여부 ③ 운용사 특수관계인 투자한 기업 여부	① ② ③ 부		
• 제31조 9항의 투자 후 회수금에 대한 재투자 여부	적부		※ 재투자 금지
• 제31조 10항의 자금 대여 방식의 투자 및 자금운용 여부	적부		※ 대여 금지 (단, 기투자업체에 대한 후속지원등 불가피한 경우 특별결의후 가능)
• 제4조 9호의 투자기간 이내 투자인지 여부 ① 투자기간 중 투자의사결정을 한 투자 ② 기투자업체에 대하여 조합원총회 특별결의로 추가투자 ③ 조합원총회 전원동의 득한 경우	① ② ③ 부		▪ 투자기간 : 2020년 10월 30일
• 제58조 4항의 이해상충여부 검토 여부	적부		▪ 업무집행조합원 및 유한책임조합원 (특수관계인 포함)이 5% 이상을 보유하는 기업 () ▪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이 자문을 하는 기업 ()
• 제33조 1항의 투자심의위원회 부의 여부	적부		▪ 투심위(예정)일 : 2017년 5월 29일
• 기타사항	적부		

□ 투자비율\* 점검(본건 포함)

(단위: 원, %)

구 분		금액	비율
주목적투자 1)	본건	1,500,001,800	2.0
	누계	15,689,308,026	20.9 <sup>1)</sup>
주목적투자 2)	본건	1,500,001,800	2.0
	누계	17,889,308,026	23.9 <sup>2)</sup>
非주목적투자 (주목적1기준)	본건	0	0.0
	누계	4,567,968,441	6.1
계		20,257,276,467	27.0
인정투자	본건	1,500,001,800	2.0
	누계	15,318,382,160	20.4 <sup>3)</sup>
동일기업투자	본건	1,500,001,800	2.0
	누계	1,500,001,800	2.0 <sup>4)</sup>
구주투자	본건	0	0.0
	누계	2,570,925,866	3.4
해외투자	본건	0	0.0
	누계	2,367,968,441	3.2 <sup>5)</sup>

\* 출자약정대비 비율,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기재

1) 출자약정액 대비 80% 이상

2) 출자약정액 대비 60% 이상

3) 출자약정액 대비 50% 이상

4) 출자약정액 대비 20% 이하

5) 출자약정액 대비 20% 이하

□ 투자금 실사 관련 점검 항목

투심위 보고내용	투자금사용목적	운전자금 및 시설투자		
계약서(안)	투자금사용목적	可	위반시 제재방안	可
	대상거래인지방안	可	대상거래발생시 처리방안	可
	투자금실사시기	可		

## 6. 기타사항

본건 투자는 관계법령 및 규약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

2017년 5월 22일

대표펀드매니저 : 정 일 부

작 성 자 : 김 홍 찬

준 법 감 시 인 : 김 혜 진

업무집행조합(사)원 :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(주)

